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문정복 의원

찬 성 자 : 32인

수정이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개념과 서책 외에 교과용 도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체의 범위 등을 명확화하고, 학교의 장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 제29조의2제2항의 시행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하는 등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음.

안 제29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안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소정의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 및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부칙 제1조에서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9월 1일에서 같은 해 3월 1일로 앞당기 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중 안 제29조의2제2항의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9월 1일”을 “3월 1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u>9</u> <u>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u>3</u> <u>월 1일</u>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서의 사용”을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범위·저작”을 “저작”으로 한다.

①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 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 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③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④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u>도서의 사용</u>) <u><신 설></u>	제29조(교과용 <u>도서</u>) ① “ <u>교과용 도서</u> ”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u>교과서</u>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u>지도서</u>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 <u>전자책등</u> ”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
<u><신 설></u>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권·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④ -----저작권-----

-----.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

	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 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 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 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 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 제24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9조제1항 · 제31조 · 제39조 · 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 ----- ----- ----- -----제29 조제3항----- -----

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 다. ②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